

## 2015년도 업무계획

2015년 2월 2일(월) 조건부터 보도가능  
방송 · 인터넷 매체는 2월 1일(일) 낮 12시



#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

2015. 1. 29.



공정거래위원회  
FAIR TRADE COMMISSION

# 순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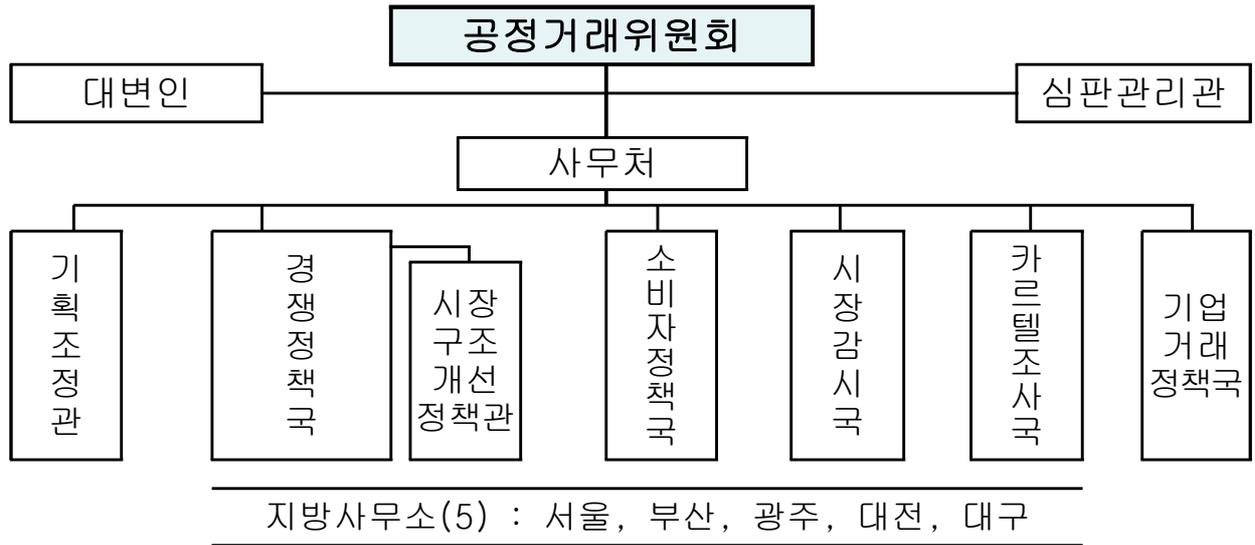
<b>I. 일반현황</b> .....	<b>1</b>
<b>II. 2014년 추진실적 및 평가</b> .....	<b>4</b>
<b>III. 2015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</b> .....	<b>8</b>
<b>IV.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</b> .....	<b>11</b>
1.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·혁신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. ....	12
2. 대·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. ....	18
3.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 ....	26
4.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겠습니다. ....	36
<b>V. 별 첨</b> .....	<b>40</b>

# I. 일 반 현 황

1. 기구 및 조직
2. 정원 및 현황
3. 소관법률 현황
4. 공정위 성격 및 기능

## 1 기구 및 조직도

- 위원회 : 위원장, 부위원장, 상임위원 3인, 비상임위원 4인
- 사무처 : 사무처장, 본부(5국 3관 1대변인), 5개 지방사무소



## 2 정원 및 현원

- 정무직(2), 일반직(519), 별정직(4) 등 총 525명

(2015. 1. 28. 기준, 단위: 명)

구분	정무직	고위공무원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이하	계
정원	2	14	10	32	35	172	260	525
현원	2	12	9	32	34	179	269	537

## 3 소관법률 현황

-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, 소비자정책 관련 13개 법률 운용
  -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(5) :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가맹사업법, 대규모유통업법, 카르텔일괄정리법
  - 소비자정책(8) : 소비자기본법, 표시·광고법, 약관법, 할부거래법, 방문판매법, 전자상거래법,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, 제조물책임법

## 4 공정위의 성격 및 기능

### □ 공정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자, 준사법기관

-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 등을 수립·집행
- 또한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사법적 성격도 보유
  - 對審構造하에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심리·의결 기능 수행
    - \* 독립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사무처가 원고, 기업은 피고, 위원회가 재판부의 기능 수행
    - \* 9명의 전원회의 또는 3명의 소회의에서 법위반 제재조치 등을 합의로 결정
  - 공정거래위원회의 임기·신분 보장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
  - 공정위 결정은 1심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기업은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제기

### □ 공정위의 기능

구 분	정책분야	주요 내용
시장경쟁의 보호	경쟁정책	독점력 남용, 담합, M&A 등 경쟁제한행위 시정
부당한 경제력집중 방지	대기업집단정책	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 및 부당한 내부거래 등 시정
대·중소기업간 거래 공정화	기업거래정책	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
소비자 권익증진	소비자정책	소비자 역량강화 및 소비자피해 예방·구제

## II. 2014년 추진실적 및 평가

1. 성과 및 실적
2. 미흡한 점

## 가.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

- **공기업의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를 시정하여 공공부문의 경쟁 활성화 유도**
  - \* 한국토지주택공사(146억원), 한국전력공사(106억원), 도로공사(19억원), 철도공사(17억원), 가스공사(12억원), 수자원공사(10억원), ( )는 과징금 금액
- **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적발·시정**
  - **(하도급 분야)**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(128개 업체)하고, 하도급 기술유용 관련 감시 체계를 보완\*
    - \* 정보공유 및 협조를 위해 경찰청, 중기청, 특허청과 MOU 체결(12월)
  - **(유통 분야)**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를 위해 심사 지침을 제정(7월)하고, 대형마트 등의 불공정행위 적발·시정(12월)
  - **(가맹 분야)** 중요 기재사항 미변경·미등록 가맹본부(305개)의 정보 공개서를 등록취소(8월)하고, 표준가맹계약을 개정(10월)
  - **(대리점 분야)** 대리점 고시\*를 제정(5월)하고,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조치
    - \* 「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」
- **인터넷 검색시장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불공정관행 시정**
  - \* 네이버·다음(3월), SAP코리아(10월)에 대해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조치를 결정하고 소비자후생 제고 및 중소기업자 상생지원 사업 추진

## 나. 민생분야 등 법집행 강화

- **공공입찰\* 및 민생분야\*\* 등에서 총 56건의 담합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**
  - \* 인천도시철도(2월, 1,322억원), 경인운하(4월, 991억원), 호남고속철도(8월, 4,354억원) 등
  - \*\* 보일러(3월, 5.5억원), 렌터카(7월, 7천만원), 무인경비(10월, 50억원) 등
- 영화, 종합유선방송 시장에서의 차별적 취급,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정

□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

- (개인정보 보호)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
- (전자상거래·모바일거래) 전자상거래법 준수요령을 마련하고 음원·IPTV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및 앱마켓 운영자의 불공정약관 시정
- (지식재산권) 아이디어 공모전·출판계약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
- (산후조리원·해외연수 프로그램) 요금체계·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알리지 않는 행위 시정

---

## 다. 경제민주화과제 지속 추진

---

□ 대·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민·관 합동 T/F를 통해 현장 실태점검 실시

- 부당특약 및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 등 고질적 불공정거래 경험 중소기업수가 제도시행 전후 대비 평균 30~40% 감소하는 등 거래 행태 개선
  - \* 중기중앙회 설문조사('14.11월) 결과, 84.3%의 중소기업체가 1년 전에 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('13년 대비 12.3%p 증가)

□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마무리

-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·과징금 고시 개정작업 완료

□ 대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

- \* 6개 기업집단 소속 100개 기업을 점검하여 57건의 공시의무위반을 적발하고 총 11억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

□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순환출자현황 공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및 교육·홍보 적극 실시

- \* 탈법행위유형 마련(7.21, 시행령 개정), 세부공시기준 마련(11.17, 공시규정 개정)
- \* 제도시행(7.25) 이전부터 순환출자 고리수 대폭 감소('13년 97,658개→'14.9. 471개)

## 라. 경쟁법 글로벌화 적극 대응

-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
  - FTA 경쟁챕터 협상(중국·베트남), 양자협약(미국·EU·일본 등) 및 MOU 체결(일본·브라질)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를 완화
  - 서울국제경쟁포럼의 성공적 개최, ICN·OECD 등 국제 경쟁커뮤니티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경쟁당국으로서의 국제위상 제고
-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준 베어링, 화학첨가제 등 중간 생산재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
  - \* 일본·독일계 베어링업체들의 가격담합(778억원, 고발), 프랑스·네덜란드 화학첨가제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적발·제재(114억원)

## 2

### 미흡한 점

- 대·중소기업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도입 이후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, 여전히 불공정 거래관행 잔존
  - 특히 중소기업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점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불공정관행을 지속할 유인을 제공
- 소비자정책 추진주체(공정위·타부처·지자체·소비자원·소비자단체)간 소비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
  - 해외직구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선제적인 대처 미흡
- ICT 분야 등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법 집행이 미흡

### Ⅲ. 2015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

<정책추진 여건>

- ◇ 시장의 독과점화가 지속되고 있어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
  - \* 산업집중도(가중평균): 54.2%('07년) → 55.3%('08년) → 55.8%('09년) → 54.9%('10년) → 56.1%('11년)
  - \*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수(CR1≥50, CR3≥75): 46개('04~'08년) → 43개('05~'09년) → 47개('06~'10년) → 59개('07~'11년)
  
- ◇ 경기회복 지연 및 내수부진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비용 또는 사업리스크를 전가할 우려
  - \* GDP 성장률: 3.7%('11년) → 2.3%('12년) → 3.0%('13년) → 3.3%('14년) → 3.4%('15년, 한국은행 예상)
  - \* 소매유통업 성장률: 1.6%('13년) → 2.2%('14년) → 2.4%('15년, 대한상의 예상)
  
- ◇ 해외직구, 모바일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분야에서 소비자피해가 확산될 가능성
  - \* 해외구매(억원) : 5,233('11년) → 7,969('12년) → 11,389('13년) → 16,271('14년)
  
- ◇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,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국내 기업·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더욱 커짐

□ 4대 핵심과제를 통해 “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”를 확립하여 창의·혁신 경제 구현

- ① 민생·공공분야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·혁신 역량 제고
- ② 하도급·유통·가맹·대리점 분야에서 상존하는 대·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- ③ 국민생활 밀접분야 피해예방, 취약계층(저소득층·노인 등) 소비자 보호, 소비자 안전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환경 조성
- ④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,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시장 보호

# 정책 비전 · 목표 · 과제

**비전**

**창의 · 혁신 경제 구현**

**목표**

**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**

**과제**

**경쟁촉진을 통한 창의·혁신 역량 제고**

- ICT 분야 등의 독점력 남용행위 법집행 강화
-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및 M&A 감시 강화
- 공공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
-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 거래 감시 강화

**대·중·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**

-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 관행 정착
- 유통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
- 보복우려 없이 신고제보 가능한 여건 조성
- 신규 도입제도 현장점검 및 체감도 제고
- 불공정관행 자율개선 유도

**소비자가 행복한 시장환경 조성**

-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 지향성 제고
- 국민생활 밀접 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
- 특수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

**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**

-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
- 글로벌 경쟁법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-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처리절차 개선

## IV. 2015년 주요 업무계획

1.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·혁신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.
2. 대·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.
3.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4.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겠습니다.

# 1.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·혁신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.

## 추진배경

### ◇ 그간의 추진실적

- (공공분야) 공공분야 입찰담합\*,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\*\* 조사·시정  
\* 호남고속철도(4,354억원), 인천도시철도(1,322억원), 경인운하(991억원) 등  
\*\*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전력공사, 도로공사, 철도공사, 가스공사, 수자원공사
- (신성장 분야) 네이버·다음, SAP코리아 등에 대한 동의를결을 통해 인터넷 검색시장 및 기업용 SW 시장의 불공정관행을 시정
- (민생분야) 보일러·렌터카·영화·종합유선방송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  
\* 보일러(3월, 5.5억원), 렌터카(7월, 7천만원), 영화(12월, 55억원)
- (규제개선) 교습소의 교과목 제한(교습소당 1개 과목) 폐지 등 15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개선하기로 합의
- (내부거래 근절)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('15.2월 시행) 및 하위법령·고시 등 개정작업 완료  
\* 대기업집단 계열사(6개 집단 소속 100개 기업)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57건의 범위반 적발·시정(3월, 12월)

### ◇ 평가

- 최근 모바일 플랫폼 분야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독점력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
- 담합 등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, 실효성 있는 M&A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
- 국가공기업에 이어 공기업 조사범위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여 공공부문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필요

## 추진전략

- ① IT 분야 등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범집행 강화
- ②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및 M&A 감시 강화
- ③ 공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
- ④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

## 가. ICT 분야 등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법집행 강화

- 시장의 독과점화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ICT 분야 등 집중감시
  - \* 국내 모바일 OS 시장은 상위 2개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9.5%(14.6월 기준)에 달하고, OS 시장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EU 경쟁당국에 신고(14.6월)
  -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, 국제적 법집행 동향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SNS·OS 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
    - 플랫폼 분야는 기술 선도자가 시장을 쉽게 독과점하고, 금융·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
    -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·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경쟁제한적 문제 발생
  - 독과점적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기술표준\* 보유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집중 감시
    - \*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은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데 상당한 전환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
    -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행위,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\*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
    - \* (예)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, 기술적 성과를 부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등
- 전자·온라인·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(1/4분기)
  - 기존의 지류(紙類) 상품권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이 발행·유통\* 되고 있어 기존 상품권 표준약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\*\* 반영
    - \* 대체로 지류 상품권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행하는 반면, 신유형 상품권은 이통사·플랫폼사업자가 발행하고 물품은 별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조
    - \*\* (예) 발행자와 다수 상품공급자 간에 주로 단기 공급계약을 통해 발행되고 있어 지류 상품권 수준의 유효기간(5년) 설정이 곤란한 측면

## 나.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및 M&A 감시 강화

### □ 공공·민생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

- 기 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
- 발주·입찰단계에서의 담합 예방 노력
  - 공공분야 발주기관들이 자체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, 공정위-발주기관간 입찰담합방지협의체를 통해 조달담당자 교육 강화
    - \* (既구축 기관) 조달청, 한전, 한수원, 철도시설공단, (구축 예정 기관) 가스공사, 철도공사 등 대규모 발주기관
  - 입찰참여업체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(CP) 도입 및 내실 있는 운영 유도
- 생필품·서비스 등 국민생활에 피해가 큰 민생품목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

### □ 선택과 집중을 통한 M&A 심사 효율화

- M&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
  - 기업의 임의적 사전심사\* 청구를 적극 유도하여 조기에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\*\*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(예 현대제철 동부특수강 건 등)
    - \* 기업이 정식신고 이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
    - \*\* 대기기업의 핵심사업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추진됨에 따라 비주력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
  - 임의적 사전심사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 정식 신고시 심사기간을 단축(30일→15일)하도록 제도화(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, 상반기)
- 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유형의 M&A는 신고의무 면제(공정거래법 국회계류중)
  - \*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(기업집단 자산 2조원 미만)의 계열회사 간 합병·영업양수, 임원 총수의 1/3 미만 임원겸임, PEF 설립 등
-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M&A는 경제분석 등을 통해 면밀히 심사하고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독과점 형성 및 소비자 피해를 차단

## 다. 공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

### □ 공기업 조사대상을 다른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\*으로 확대

\* '14년말 기준 국가공기업은 302개, 지방공기업은 398개

- 상반기 중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규모 발주 공기업 위주로 조사대상 선정
- 하반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시정

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유형
- 계열회사, 퇴직자 설립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- 계열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이권을 취하게 하는 행위
- 공사대금 부당 회수·감액행위
-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대행 강요행위
- 공기업연장시 간접비, 공사정지시 지연보상금 등 각종 비용 미지급행위

### ○ '14년 조사를 실시한 공기업 등에 대한 사건처리 마무리

\* 주요 국가공기업(7개) 및 공공재에 준하는 기간사업 영위업체(2개) 중 6개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,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내 사건처리 완료 추진

### ○ 조사과정 중 발굴한 경쟁제한적 또는 불합리한 제도·관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·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 추진

\* ('14년 발굴사례) 국가계약법 규정을 남용하여 대가지급 기한을 일률적으로 늦추는 부당한 지급관행 등

### □ 각 부처와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

#### ○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폐해가 큰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·개선

- 일반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농·수·축산물 유통, 국민의 여가 생활과 관련된 게임·관광 분야 등 분야 대상(1/4분기 발굴, 4/4분기 개선)
-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의 경쟁제한조례(2/4분기)

\* 건설산업조례, LED조명조례, 로컬푸드조례, 제주도문화예술조례 등

#### ○ 국무조정실과 「경쟁제한적 규제개선 T/F\*」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(1/4분기)

\* 규제조정실장(국조실), 사무처장(공정위)이 T/F의 공동단장 역할 수행

## 라.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

- 시장감시를 통해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시·정보공개 강화
  - 순환출자 공시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차단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계속 유도(분기별)
    - \*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 현황을 연1회, 변동내역을 분기별로 공시 의무화
  - 금산복합 기업집단, 지주회사 전환집단 등의 소유지배구조상 특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자발적 개선 유도
    -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여부,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사 현황\*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추가(공정거래법 국회계류중)
      - \*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에도, 지주회사의 자·손자·증손회사 등으로 편입시키지 않고, 총수가 직접 또는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
  -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개\*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(연중)
    - \* 주식소유현황(6월, 순환출자현황 포함), 내부거래현황(8월) 지주회사 현황(10월), 지배구조현황(11월) 분석·발표
-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및 범위반행위 감시 강화
  - 금산복합 기업집단이 교차·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차단벽이 확보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
    -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,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\*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(의원입법안 국회 계류중)
      - \* (예)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 이상
    - 금산분리 강화, 지배력 확대 억제 등 법안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보완\*(금융위와 협의완료,'14.7월)하여 추진
      - \* 중간금융지주회사 소속회사의 지주회사 체제밖 계열사 출자 금지, 과징금 산정기준 보완,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

-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투명성이 유지되고 경제력집중 우려는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기업투자를 위한 장치 마련
    - 중손회사 100% 보유원칙을 유지하되,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적고 투자촉진 효과가 명확한 경우\*에 한하여 예외허용(의원입법안 국회 계류중)
      - \* 공동출자법인, 비상장 벤처·중소기업(매출액 대비 R&D비율 5% 이상) 등
  - 수직적 출자 유지, 단계제한, 지분율 요건 등 핵심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, 위반시 엄중 제재(상시)
-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및 계열사 특혜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 주기적 점검
- 대기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\* 이행 여부에 대해 상·하반기에 각각 점검(총 6~7개 기업집단 예정)
    - \*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%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,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거래의 목적·상대방·규모·조건 등을 공시해야 함
  - 부당한 일감몰아주기\* 등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본격적 시행(2월)에 따라 법적용대상 기업의 거래실태 상시 모니터링
    - \* 사업능력, 재무상태, 신용도, 기술력, 품질,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
  - 내부거래내역 및 규모 등 전반적인 내부거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(반기별)
  - 새로 시행되는 법규정과 관련한 법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 교육 실시(분기별)
- 대기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\* 지속적 감시·시정
    - \* ①계열사에 대해 상품·용역·대여금·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, ②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·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

## 2. 대·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.

### 추진배경

#### ◇ 그간의 추진실적

- (하도급 분야)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집중점검(3회)하여 128개 업체의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(대금 미지급·지연지급,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) 적발
  - 하도급 기술유용 감시강화를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(7월)하고, 경찰청·중기청·특허청과 MOU 체결(12월)
    - \*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최초 적발·시정(LG하우시스건, 9월)
- (유통 분야)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를 위해 「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」을 제정(7월)하고,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 등 적발·시정(12월)
- (가맹 분야)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·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(305개)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, 화장품(4월)·커피(7월) 등 가맹본부의 판촉비용 전가, 인테리어업체 선정강요 등 불공정행위 적발·시정
- (대리점 분야) 대리점 고시\*를 제정(5월)하고,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(거래지역·상대방 제한, 제품구입 강제 등) 적발·시정\*\*
  - \* 「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」
  - \*\* 삼육식품(3월)·서울도시가스(3월)·아모레퍼시픽(8월)·정식품(11월)·샘표식품(12월)
- (공정거래협약)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체결 기업 15개 증가('13년 177개 → '14년 192개)

#### ◇ 평가

- 민·관 합동 TF 현장 실태점검 실시결과, 부당특약 및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거래 경험 중소기업수가 제도시행 전후 대비 평균 30~40% 감소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개선되기 시작
  - \* 중기중앙회 설문조사('14.11월) 결과, 84.3%의 중소기업체가 1년 전에 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('13년 대비 12.3%p 증가)
  - \* 서울시 설문조사('14.9월) 결과, 65.8%의 대리점이 밀어내기 관행이 개선되었고, 26.4%는 밀어내기 관행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

-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, 불공정 거래관행이 일부 남아 있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도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
  -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각하며 경기회복 지연으로 악화 우려
  -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 신고를 기피하고, 그에 따라 불공정행위 적발·시정에 한계
  -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불공정 관행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
- 원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대·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킬 필요

## 추진전략

- ①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관행 정착
- ② 유통·가맹·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
- ③ 보복 우려 없이 신고·제보 가능한 여건 조성
- ④ 신규 도입제도 현장점검 및 체감도 제고
- ⑤ 불공정관행 자율개선 유도

- ◇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  
 → 직권조사 방식 개선, 자율준수 확산 등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관행 정착  
 ※ 전체 제보 중 48.1%가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(서면실태조사, '14.5월)

### □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심층 조사

-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
  - \* 민원 빈발분야(예시): 건설, 의류, 기계, 자동차, 선박 등
- ‘못 받아서 못 주는’ 순차적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~2차 협력업체를 우선조사하고,
  - 윗 단계에서의 대금미지급이 그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새로운 조사방식 도입(일명 ‘윗 물꼬 트기’ 조사)
  - \* 중소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 결과, 하도급대금 회수 관련 애로는 주로 1~2차 협력업체 단계에서 발생

#### 하도급대금 관련 주요 법위반 유형

-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
-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(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)
-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(기업구매카드,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)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
-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

### □ 창의·혁신 활동이 활발한 지식·정보성과물\* 관련 불공정 하도급거래 점검

- \* 「용역위탁 중 지식·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」를 제정(1.1. 시행)하여 지식·정보성과물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구체화 함
- 소프트웨어 개발,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\*를 점검
  - \* 부당특약, 서면 미교부(구두계약), 부당단가 결정, 대금 미지급 등

□ 자진시정 및 자율준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

-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경고조치는 하되,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\*하여 자진시정 활성화 유도

\* 현행은 자진시정시 경고조치 및 벌점 0.5점 부과

- 다만,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(하도급법시행령 개정, 상반기)

-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대금관련 불공정행위 예방 유도

- 협약 이행평가항목 중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,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대금관련 평가배점 확대

\* 평가배점을 업종별(예: 26→31점, 건설)로 3~9점 확대(1.7. 旣 조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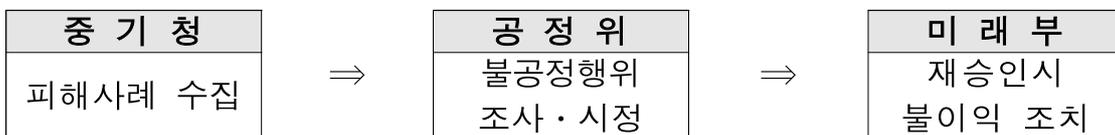
**나. 유통·가맹·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**

**(1) 불공정 유통·납품 관행 개선**

-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반면,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TV홈쇼핑 분야 집중점검 및 시정 추진

-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조사·시정 및 예방을 위해 부처간 협업체계인 「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T/F」 구축(1/4분기)

<정부 부처간 협업체계>



-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하여 법위반시 엄중제재(상반기)

\* 중점 점검사항(예시) :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, 일방적인 방송 취소·변경,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

□ 대형마트·백화점·아울렛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

- 대형마트·백화점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된 제도를 위주로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및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\*

\* 중점 점검사항(예시) :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비용전가 행위,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요구, 특약매입거래시 비용분담기준 준수 여부 등

-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업영역을 아울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\*도 감시·시정

\* (예) 납품업자에게 지역 중소유통업자와의 거래를 제한, 최저매출보장조건 강요 등

**(2)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**

- 현장실태점검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중점감시 분야(업종·범위반행위 유형)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 실시

- 가맹점주들의 민원다발 분야 및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권리강화 신규제도에 대응한 가맹본부의 부담 전가(풍선효과) 가능성 등에 대한 감시 강화

\* (예) 가맹본부가 계약에 근거없는 판촉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,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교체 강요 등('14년 가맹점 간담회시 주요 지적사항)

- 단기간에 가맹점이 급증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 
- 허위·과장 정보를 통한 가맹점 모집 등 피해발생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

- 가맹희망자들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맹사업 비교정보\* 제공 강화

\*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분석하여 가맹본부별 폐점률, 가맹점 수 증가율,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추이 등 공개 → 가맹사업 홈페이지

**(3) 대리점 분야에서 본사의 불공정 관행 개선**

-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위법행위 확인시 엄중조치

-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 고시\*를 통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제품 밀어내기, 판촉비 전가, 판매목표 강제 등 각종 불공정행위 차단

\* 「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」('14.5월 제정)

-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신고,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

## 다. 보복 우려 없이 신고·제보 가능한 여건 조성

◇ 불공정행위 제보·조사·사후이행 단계 전반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보호시스템 구축

※ 중소기업들 중 49.3%가 불공정행위 대책 1순위로 신고자 비밀보장을 요구(중기중앙회, '14.11월)

### <제보 단계>

□ 중소기업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익명제보 처리 시스템 구축

○ 홈페이지에 제보자의 인적사항 입력없이 제보할 수 있는 “익명 불공정제보센터”를 설치·운영하고, 적극적인 홍보 실시(1/4분기)

\* 제보자가 자신의 신원 유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○ 현재 15개 업종별 중기협동조합에 설치된 익명제보센터\*를 다른 업종(예: 유통, 소프트웨어 등)으로 확대 추진(상반기)

\* 회원사들의 불공정하도급 경험사례를 협동조합이 파악하여 공정위에 직접 제보('14.10월부터 플라스틱, 금형, 단조, 피복 등 분야에서 운용 중)

○ 익명제보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·교육을 실시하고,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하여 처리

\* 현재 익명제보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, 무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처리절차규칙(제12조)에 따라 대부분 심사불개시 처리

□ 서면실태조사\* 협조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대상에 추가하고,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\*\* (하도급법 개정안 국회제출, 3/4분기)

\* 매년 5천개 원사업자, 9만5천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및 법위반 혐의 파악

\*\* 현행 과태료 상한액(5백만원)을 상향 조정

### <조사 단계>

□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 조사하는 등 신속적으로 조정하여 제보자의 신원유출 방지

□ 담당 조사공무원이외의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시스템에 신고인 가명 처리(상반기)

## <후속 단계>

### □ 신고·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·탈법행위 점검 강화

- 시정조치 이후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(발주량 축소, 거래 중단 등) 및 탈법행위\* 여부를 확인점검하고, 적발시 엄중제재
  - \*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대금을 회수하는 행위 등
- 시정조치 이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(2~3회)하여 보복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

## 라. 신규 도입제도 현장점검 및 체감도 제고

### □ 대·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점검하고 결과를 공개

- 특히, 금년부터는 시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점검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·하반기에 각각 차별화하여 실시

### □ 상반기 중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여부 및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직권조사에 적극 활용

#### ○ 중점 점검분야

- ▶ [하도급] 부당특약 실태 조사
- ▶ [유 통]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행위 및 풍선효과 점검
- ▶ [가 맹] 편의점 심야영업 허용 실태 및 영업지역 설정 실태점검

### □ 하반기 중 설문조사를 통해 1년 전·후 거래관행 변화에 대한 체감도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

- 각 제도별 인지도, 1년 전·후 각각의 불공정행위 경험유무 등 전반적인 거래관행의 개선 정도 등을 점검

## 마. 불공정관행 자율적 개선 유도

-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**공정거래협약 확산**
  - 협약체결 실적이 전혀 없는 **가맹, 광고업종**의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을 장려(가맹, 광고업종 협약평가기준은 '14년 기 마련)
    - 아울러, 현행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세분화(전기·전자, 기계·자동차 조선, 화학·비금속·금속)하여 **협약평가의 현실정합성 제고**
  - 중소기업과 직접 하도급거래를 하는 **1차 협력사**(중견기업)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내실 있는 이행을 유도
  - 공정거래협약 이행 **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를 강화**하여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우수업체의 평판 제고
-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**표준계약서 확대 보급**
  - 업종의 거래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·개정(4/4분기)
    - **하도급**: 광고, 방송, 화물운송업 등의 표준계약서 개정
    - **유통**: 대형유통업 특약매입·매장임대차, TV홈쇼핑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
    - **가맹**: 편의점 등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정·보급
  - 표준계약서 사용시 공정거래협약 평가배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
    - \* 모든 업종의 평가배점을 4점씩(예: 8→12점, 건설) 확대(1.7. 既 조치)
- **분쟁조정 제도 활성화**
  - 공정위 조사·시정에 앞서 **사업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\* 의뢰 대상범위를 확대\*\***(하도급 공정화지침 개정, 상반기)
    - \* 매년 1,100여건의 하도급 분쟁조정(75%이상이 대금관련) 접수(성립율: 87%)
    - \*\* (예) 제조: 매출액 5천억→7천억 미만, 용역: 매출액 5백억→1천억 미만, 건설: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→30위 미만
  - 분쟁조정 **모범·실패사례 공유**를 위한 포럼 개최(반기별) 및 **우수 분쟁조정사례 선정·홍보** 등을 통해 분쟁조정 역량 및 전문성 제고

### 3.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
#### 추진배경

##### ◇ 그간의 추진실적

-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혁신의욕 저해요인 차단
  - (개인정보 수집)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
  - (전자상거래·모바일거래) 전자상거래법 준수요령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부당행위 시정
    - \* 음원·IPTV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
    - \*\* 앱마켓 운영자의 불공정약관 시정
  - (지식재산권) 아이디어공모전·출판계약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
- 정보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
  - 가격·품질비교정보, 유통채널별 가격비교 정보 제공
  -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등 가격비교사이트상 가격정보의 정확성 제고

##### ◇ 평가

-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마련과 함께 공정위의 소비자시책 총괄·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 필요
- 해외직구 등 기술발전 또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 필요
- 다단계·방문판매·상조분야 등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의 경우 시장 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할 필요

#### 추진전략

- ①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지향성 제고
- ②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
- ③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

- (현황 및 문제점) 개별 주체의 소비자시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, 소비자단체·지자체의 역할 한정
  - 각 부처의 소비자시책을 연계·조정하여 소비자에게 정책 효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
    - 소비자안전·교육은 유기적인 협업부족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, 피해구제는 개별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접근성 부족
  -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정보제공,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역량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원 부족
  - 지자체의 소비자시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는 갖추어졌으나, 개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소비자시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(추진방향) 공정위의 소비자시책 연계기능을 강화하고, 소비자단체·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
  - 소비자시책 추진주체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·조정하고,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문제 해결
    -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소비자안전·교육분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 정책의 소비자지향성을 제고
    -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을 통합하여 소비자접근성 제고
    - 개별 상담정보, 위해정보 등을 연계한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문제 해결
  -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
  - 지자체의 담당 조직을 확충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## [1]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강화

- 각 부처 정책·제도의 소비자지향성을 제고하고,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·교육 분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

### <소비자지향성 제고>

- 소비자분야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비자지향성 평가과제 발굴(상반기)
- 발굴된 과제를 소관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지향성평가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부처의 수용을 유도하고 이견을 조정(하반기)

\* 필요시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

### <소비자안전분야>

- 소비자안전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부처 간 합동 실태조사 실시(상시)
- 안전분야 전문위원회\*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각지대 발생 예방(상시)

\* 현재는 소비자원인 실태조사 후 소관부처에 직접 안전시책 수립·시행을 건의

### <소비자교육분야>

- 개별부처·지자체·소비자단체별로 실시되고 있는 소비자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 전체적인 소비자교육 시행방안\* 수립(상반기)

\* (예) 공정위의 소비자정보포털 '스마트컨슈머'를 소비자정보·교육포털로 확대·개편하여 소비자교육 추진 주체간 교육콘텐츠·교육기법 등을 공유

- 소비자교육 전문위원회를 통해 소비자교육 시행 방안 및 개별 주체간 역할 분담 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소비자교육 추진체계 구축(하반기)

## **(2) 범부처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**

\* 2015년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16~2017년도에 시스템 구축

- 소비자의 구매결정-제품이용-피해구제 등 구매사용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- 각 기관의 소비자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
  - 피해구제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구축되어 있어,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혼선과 불편 초래

## **(3)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비자문제 해결**

-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\* 해결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

\* (예) 아동·청소년기(아동용품, 교육서비스), 청년기(결혼정보업, 전자상거래), 중년기(아파트·자동차 구매), 노년기(건강식품, 상조업)

- 1372 상담정보, CISS 데이터 등의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비자 문제를 진단하고 소비자정보 제공프로세스 개발(하반기)
  -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구축('17년)
- 소비자의 생명·신체를 위협하는 위해 관련 정보 품질제고 및 공유 활성화
    - 현행 병원·소방서 위주의 위해정보 수집채널 확대 및 정보품질 제고(하반기)
      - 최근 3년간 위해정보 제출실적을 토대로 위해정보제출 병원 재지정
      -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정보, 어린이집안전공제회·학교안전공제회의 사고정보, 다산콜센터의 상담정보 등으로 수집 채널 다양화
      - 모바일 앱 등으로 위해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채널 확대

-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과 여타 국가기관의  
위해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위해정보 공유 활성화(1/4분기)
- CISS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, 국토부의 자동차 결함  
신고센터 연계를 통해 제품안전 또는 자동차안전 관련 정보 공유

#### **(4)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**

##### □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속한 설립·운용 추진

-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문제\*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 
대응할 필요
  - \* ICT 기술발전, FTA확대 등으로 해외직접구매 및 신상품 소비 증가→ 신유형  
소비자 피해발생 및 피해 신속 확산, 소비자안전 문제 등 발생
- 특히, 새로운 문제 발생시마다 뒤늦게 해법을 찾기보다 피해예방을  
위해 정보제공 등 소비자역량 강화사업을 확대·강화할 필요

##### □ 기금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(의원입법안 국회 계류중)

- 법 개정이후 기금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기금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
  - \* 기금설립추진단(발기인) 구성 → 발기인대회(정관마련, 초대이사회 구성) → 재단  
법인 설립 허가 → 법인 등기 및 개소식

### <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방향 >

- ◇ (기본방향)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기금으로 추진
  - (운용주체) 소비자단체·학계·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
  - (기금용도) 소비자역량강화를 위한 소비자정보제공, 소비자교육에 중점
    - 소비자피해구제는 피해자 보상 등 직접 구제는 하지 않고,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제도 운영 지원 등 간접 지원 방식 활용
    - 공정위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·위탁하는 사업 수행
  - (기금재원) 정부보조금, 민간출연금, 동의의결지정사업 위탁사업비, 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함

## (5)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

- 지역소비자행정의 제도적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으나 추진 여건이 열악
  - 16개 지자체 모두 소비자조례를 제정하였고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소비생활센터를 발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조성
  - 그러나 지자체의 타 업무에 비해 조직·인력이 부족하고,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미흡
- 지역소비자행정 추진 기반 마련
  - 각 시·도에 소비자행정 담당 조직의 확충을 추진
  -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조직, 인력, 예산, 업무 등을 실태조사하여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역량 강화(상반기)
  - 지역별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‘지역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’를 구성하여 지역 소비자이슈에 공동대응(하반기)

## 나.

##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

### (1)

###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거래기반 마련

□ 최근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

\* 해외구매 동향(억원): 5,233('11년)→7,969('12년)→11,389('13년)→16,271('14년)

\*\* 해외구매 관련 피해 소비자원 상담 현황(건): 1,181('12년) → 1,551('13년) → 2,781('14년)

○ 이에 따라 사업자의 위법행위 시정,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, 국제적 공조 등 다양한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 추진필요

#### < 해외구매의 유형 >

- 해외직구 : 소비자가 해외쇼핑몰 접속 → 구매 → 해외쇼핑몰이 직접 국내 배송
- 해외구매대행 : 소비자가 구매대행사 사이트 접속 → 구매 → 대행업체가 해외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 대신 구매 → 대행업체가 국내 배송

□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

○ 소비자원에 신설(1.2.)된 '국제거래지원팀'을 활용하여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응

- 피해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하여 공개(상시)

- 해외구매 주요대상국의 전자상거래관행 및 피해구제와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

○ 명절 등 해외구매가 집중되는 시기에 피해주의보 발령(2,9,11월)

○ 구매대행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(상반기) 및 구매·배송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(3/4분기)에 대한 시정조치

○ 국내 독점수입업체가 소비자의 해외사이트를 통한 직접구매를 차단하는 등 소비자 선택 제한 행위 감시

○ UN ODR(Online Dispute Resolution) 논의 참여 등 소비자피해 예방·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

- 법무부·미래부 등과 협업하여 우리나라 법제와 부합하는 온라인 분쟁해결(ODR) 절차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

\* 차기 회의(31차)는 2.9~2.13.간 UN 본부에서 개최되며, 한국대표단으로 공정위, 법무부, 미래부, 법원 등이 참가할 예정

**[2]****국민생활 밀접분야 거래관행 개선****□ 불공정약관 감시·시정**

- (금융) 은행약관·상호저축은행약관 중 금융회사의 면책조항,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지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 시정(1/4분기)
  - 캐피탈사의 자동차 임대차 관련 불공정 약관\*(3/4분기) 및 여신전문 금융분야·금융투자분야의 불공정약관도 시정(하반기)
  - \* 지나치게 높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규정한 조항 등
- 결혼준비대행업\*(1/4분기), 장례식장\*\*(4/4분기) 이용약관 실태조사 후 불공정약관을 시정
  - \* 계약 해제·해지 거절,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
  - \*\* 수의·유골함 등 장례물품 끼워팔기, 현금 결제 강요행위, 음식물 반입금지 등
- 최근 이용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약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약금 또는 환불관련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(2/4분기)

**□ 부당한 광고 등 집중점검**

-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당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·상가·오피스텔 분양광고에 대해 집중점검(2/4분기)
- 오픈마켓(통신판매중개자\*)이 거짓·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감시(하반기)
  - \*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온라인 거래를 자신의 사이트 등을 통해 중개하는 사업자
  - 객관적 근거 없이 품질·성능 등이 우수하다고 광고하거나 포인트 적립 등을 내세워 상품 판매 후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 점검
-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분야 등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시 온라인 해지 가능여부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준수실태 점검(상반기)

## 다.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

### (1) 다단계판매 분야 소비자 보호

- 불법다단계는 대규모의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정보제공 등 피해예방 활동 필요
- 다단계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, 정보제공 및 홍보 실시
  - 법적한도초과 후원수당 지급, 청약철회 거부, 교육·합숙강요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감시 강화(상시)
  - 최근 증가하고 있는 **외국계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\***로 인한 소비자 피해\*\* 방지
    - \* 인터넷 발달, 초국경적거래 확대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높은 후원수당을 미끼로 국내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등록 외국계 다단계업체 급속히 증가
    - \*\* 높은 이익보장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며, 미등록 업체이므로 보상이 불가능 ('14년 총 13개 업체·33명 국내가담자 경찰 수사의뢰, 111개 관련 사이트를 폐쇄 조치)
    - 사이트 폐쇄·차단조치 의뢰, 국내 책임자 수사의뢰, 해당 국가 경쟁 당국 및 협회와의 협조 등을 통해 피해확산 방지(상시)
  - 다단계·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기존 **정보공개사항**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, 필요시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(상시)

### (2) 전화권유·방문판매 분야 소비자 보호

- 최근 전화권유·방문판매업체의 청약철회 방해, 허위·기만에 의한 상품 판매 등 피해 빈발
  - 특히, 무료상품을 미끼로 한 “**홍보관 판매**” 등 **고령소비자**를 대상으로 한 허위·기만적 상품판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
- 전화권유·방문판매업체의 소비자 피해유발행위 감시 강화
  - 홍보관 판매업체에 대해 **실태조사**(상반기)

- 청약철회방해, 허위·기만 상품판매 등 법 위반행위 조사(상시)
  - 법위반행위 내용, 반복적 법위반업체 명단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, 동 내용을 지자체를 통해 경로당에 통보(1/4분기)
-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Do-not-call 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고, 위반자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유도\*(상시)
  - \* (예) 행자부의 지자체 평가기준에 Do-not-call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분 실적 반영

### [3] 상조 분야 소비자 보호

- 시장포화 상황에서 부실업체 퇴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, 이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증가 우려
  - 상조업체의 부도·폐업, 부도·폐업된 상조업체를 인수·합병한 업체의 불법행위\*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
    - \* 선수금 미보전, 해약환급금 미반환 등
  - 경쟁업체 고객 빼오기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경쟁업체의 부도 유도 및 시장교란 우려
-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, 부도·폐업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추진
  - 계약인수 과정에서의 선수금 미보전, 해약환급금 미지급, 부당고객 유인행위 등 법위반행위 감시 및 제재(상시)
    - 지자체, 경찰 등과 협력하여 상습 법위반 업체 상조시장 퇴출 추진
  - 선수금 보전 강화, 조합업무의 관리·감독 강화 등 리스크 관리
    - 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선수금 누락을 감시하고(은행예치 상조업체), 총 담보비율 상향 등 조합 재무건전성 강화(공제조합 상조업체) (상반기)
  - 상조업체 정보 공개\*, 신속한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(6월, 12월)
    - \* 현재 공개중인 선수금, 재무관련 정보(자산, 부채 등) 뿐만 아니라, 법위반 및 시정조치사실도 공개하는 방안 추진

## 4.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겠습니다.

### 추진배경

#### ◇ 그간의 추진실적

- 베어링, 화학첨가제 등 중간 생산재 국제카르텔에 대해 엄정 조치
  - '98년~'12년동안 지속된 베어링 담합을 적발하여 9개 일본계·독일계 업체에게 과징금 총 778억원을 부과(11월)
  - '02년~'13년동안 지속된 화학첨가제 담합을 적발하여 프랑스계·네덜란드계 업체에게 과징금 총 114억원을 부과(11월)
-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강화
  - FTA 경쟁챕터 협상(중국·베트남), 양자협약(미국·EU·일본 등) 및 MOU 체결(일본·브라질)
  - 서울국제경쟁포럼의 성공적 개최, ICN·OECD 등 국제 경쟁커뮤니티 적극 참여 등

#### ◇ 평가

-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외국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,
  - 이를 위해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보다 강화할 필요
- 조사·심의 과정 전반에 걸쳐 사건처리절차를 선진화할 필요

### 추진전략

- ①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
- ② 글로벌 경쟁법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- ③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처리절차 개선

- 국내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\*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\*\*에 대해 집중 감시
    - \* 인텔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재('08.6월), 퀄컴의 로열티 차별·조건부 리베이트 등 제재('09.7월)
    - \*\* (예) 표준필수특허로 형성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, 실시권자로부터 표준특허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 수취 등
  - 경쟁제한성 입증 등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, 내부 ICT 전문가, 조사 베테랑 등으로 ICT분야 특별전담팀(T/F)을 구성(단장: 사무처장)하여 2월부터 운영
  - 글로벌 법집행 흐름과 부합하도록 관련기업 애로청취, 전문가 의견청취 및 해외 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등을 참고
-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의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 강화
    - 자동차·전자 등 주력산업이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·소재분야 집중 감시
    - 미국·EU 등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공시가격\* 공동 조작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
      - \* 원유, 곡물 등은 국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, 글로벌 과점업체들이 인위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조작할 경우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부작용 발생
    -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여 우리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 억지력 제고
      - \* 최근 베어링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2개 일본 업체들에 대해 고발 조치('14.11월). 미국은 카르텔 억지 수단으로 형사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
- 국내 시장과급력이 큰 글로벌 M&A건에 대한 심사 강화
    - 국내 경제 비중이 큰 IT·전자 산업과 관련된 중간 투입재 시장의 글로벌 M&A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진행
      - \* MS-노키아 M&A건에 대해 동의를결 개시여부 2월 중 심의예정
      -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, 시정방안 의견수렴 (Market Testing) 등 국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
    - 우리나라와 경제 여건이 유사하여 글로벌 M&A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동아시아 경쟁당국 간 공조체계 구축
      - 역내 경쟁당국 M&A 워크숍의 정기적인 개최 검토
      - \* 국제기구(OECD 지역경쟁센터), 학계(아시아경쟁법 학회) 등과도 협력

## 나. 글로벌 경쟁법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
### <전략적 협력관계 강화>

□ FTA\* 경쟁챕터에 외국 당국의 차별적 법집행 예방 조항\*\*, 방어권 보장\*\*\* 등 반영 적극 추진(연중)

\* 한·중·일 FTA, RCEP(아세안 10개국 + 한국·중국·일본·호주·뉴질랜드·인도)

\*\* 경쟁법 집행시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경쟁법 집행

\*\*\* 피심인의 증거·의견 제시권 보장, 피심인의 재심 청구·제소권 보장

○ 既 타결된 FTA(중국, 베트남 등)의 효과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·홍보 강화\*

\* 주중대사관 주관 현지기업대상 설명,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(2016년 예산에 반영)

□ 국내기업의 경쟁법 리스크가 큰 주요 국가[EU(3월), 일본(7월), 미국·캐나다(9월)]와 양자협의회 개최 등 협력 확대

○ 국경간 소비자문제 대처 등을 위해 美경쟁당국(FTC, DOJ)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「경쟁·소비자법 집행 협력을 위한 MOU」 체결 추진(9월)

□ 「한·중·일 국제카르텔 공조네트워크」 창설 및 논의 주도

○ 카르텔국장급 모임을 정례화(년 1회)하고 상시 의사연락 채널 구축

\* 동북아 주요 3국은 국제카르텔에 동시 노출될 개연성과 공조조사 필요성이 높으므로 상호 법집행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 협의체가 긴요

### <다자 논의>

□ OECD(6월, 10월), ICN(4월) 등 다자간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법 집행의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

○ 국가간 관할권 조화, 표준특허 남용 등 국익과 밀접한 경쟁법 현안에 대해 적극 참여 및 우리 의견 반영 추진

### <기술 지원>

□ 다양한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

○ 인도네시아 경쟁당국(2월-5월) 및 EEC\*(하반기)와의 KSP사업\*\*, 국제 경쟁정책워크숍(9월), 인턴십(9월), 경쟁법 전문가 파견(하반기) 등

\* Eurasian Economic Commission: 러시아,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

\*\* 개도국 대상의 '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'으로 대상국가의 확대 추진(기재부 등 협의 필요)

## 다.

##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처리절차 개선

### (1)

### 사건처리의 공정성 제고

- 사건처리절차 법제화의 차질 없는 추진
  - 피조사인·피심인 방어권 강화, 사건처리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건처리 과정의 주요사항을 **법률에 규정**(공정거래법 국회계류중)
    - \* 그동안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주로 고시(사건처리절차규칙)에 규정
  - 후속조치로서 **사건처리절차규칙을 개정**하여 법제화 사항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
- 피심인의 반론권 보장, 충실한 심리 진행 등을 위해 **심의갱신제도\***를 도입함으로써 **심의속개 활성화**(사건처리절차규칙 개정, 상반기)
  - \* 심의 속개시 이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도 이전 회의의 심의내용과 피심인의 주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
-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
  -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이 범위반 내용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 추진(하도급·유통 분야, 하반기)
    - \* 현행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은 ‘하도급 대금(하도급 분야)’, ‘납품대금(유통 분야)’로 되어 있음

### (2)

###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

- 위원회 처분 공개 확대(지침 제정, 상반기)
  - 위원회의 **경고조치**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개양식(피조사업체명, 사건명, 경고사유 등)을 마련하여 **일정주기별**(2~3개월 등)로 **대외공개** 추진
- 심결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(하반기)
  - 국민의 알권리 확충을 위해 **의결서·보도자료·소송결과**를 연계하여 대외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

## Ⅵ.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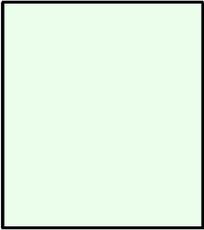
1. 과제별 추진일정
2. 2015년 예산현황
3. 산하 공공기관 현황

1

과제별 추진일정

	실천 과제	일정	담당부서
경쟁촉진을 통한 창의·혁신 역량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CT 분야 등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법집행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바일 SNS·OS 사업자 감시 강화</li> <li>독과점적 SW 사업자 및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 감시</li> <li>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</li> </ul> </li> </ul>	상시 상시 1/4분기	서비스업감시 " 약관심사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및 M&amp;A 감시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·민생분야 담합 집중감시</li> </ul> </li> <li>입찰참여업체 CP 도입 및 내실있는 운영 유도</li> <li>임의적 사전심사 관련 정식신고시 심사기간 단축(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)</li> </ul>	상시 상시 상반기	카르텔총괄 & 입찰담합조사 경쟁정책 기업결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기업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</li> <li>각 부처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·개선</li> <li>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</li> </ul> </li> </ul>	상시 1/4/4/4분기 2/4분기	시장감시총괄 시장구조개선 규제개혁작업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순환출자 공시점검</li> <li>지주회사 전환관련 제도개선(의원입법안 국회계류중)</li> <li>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점검</li> <li>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관련 내부거래 실태점검</li> </ul> </li> </ul>	분기별 하반기 반기별 반기별	기업집단 " 시장감시총괄 "
대·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관행 정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원 빈번 업종 조사</li> <li>지식·정보성과물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</li> <li>자진시정 인센티브 제공(시행령 개정)</li> </ul> </li> </ul>	상시 상시 상반기	기업거래정책 건설용역하도급 기업거래정책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통·가맹·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TV홈쇼핑 정부합동 TF 구성</li> <li>TV홈쇼핑 불공정행위 집중점검</li> <li>대형마트·백화점·아울렛 불공정행위 감시</li> <li>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감시</li> <li>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감시</li> </ul> </li> </ul>	1/4분기 상반기 상시 상시 상시	유통거래 " " 가맹거래 시장감시총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복 우려없이 신고·제보 가능한 여건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익명제보 처리시스템 구축</li> <li>익명제보센터 확대</li> <li>보복금지 대상 추가 및 허위자료제출 제재 강화(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제출)</li> <li>신고인 가명처리</li> <li>보복조치·탈법행위 점검</li> </ul> </li> </ul>	1/4분기 상반기 3/4분기 상반기 상시	기업거래정책 " " 감사담당 기업거래정책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 도입제도 현장점검 및 체감도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장점검</li> <li>설문조사</li> </ul> </li> </ul>	상반기 하반기	기업거래정책 "

실천 과제	일정	담당부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불공정관행 자율적 개선 유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정거래협약 확산</li> <li>- 표준계약서 확대 보급</li> <li>- 분쟁조정 의뢰 대상범위 확대(지침 개정)</li> <li>- 분쟁조정 모범·실패사례 공유 포럼 개최</li> </ul> </li> </ul>	상시 4/4분기 상반기 반기별	기업거래정책 " " " "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지향성 제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강화</li> <li>· 소비자지향성 제고(과제발굴, 이견조정)</li> <li>· 소비자안전분야(실태조사, 대책마련)</li> <li>· 소비자교육분야(시행방안 수립, 추진체계 구축)</li> <li>- 범부처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 수립</li> <li>- 위해정보 수집채널 확대</li> <li>- CISS와 여타 국가기관 시스템 연계</li> <li>-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 정보제공체계 개발</li> <li>-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근거 마련(의원입법안 국회제류중)</li> <li>- 기금설립추진단 구성</li> <li>-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 기반마련</li> <li>· 실태조사</li> <li>· 지역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 구성</li> </ul> </li> </ul>	상,하반기 상시 상,하반기 4/4분기 하반기 1/4분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	소비자정책 " " 소비자안전정보 " "(소비자원) 소비자정책(") " " " "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거래기반 마련</li> <li>· 피해다발 인터넷 쇼핑몰 조사·공개</li> <li>· 피해주의보 발령</li> <li>· 구매대행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</li> <li>· 구매·배송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</li> <li>· 국내독점수입업체 등의 소비자선택제한행위 감시</li> <li>- 불공정약관 시정</li> <li>· 은행·상호저축은행</li> <li>· 캐피탈사 자동차 임대차</li> <li>· 여신전문금융, 금융투자</li> <li>· 장례식장</li> <li>· 결혼준비대행업</li> <li>· 지자체 오토캠핑장</li> <li>- 부동산 부당광고 직권조사</li> <li>- 오픈마켓 전상법 위반 감시</li> <li>- 초고속인터넷 전상법 및 방판법 위반 감시</li> </ul> </li> </ul>	상시 2,9,11월 상반기 3/4분기 상시 1/4분기 3/4분기 하반기 4/4분기 1/4분기 2/4분기 2/4분기 하반기 상반기	소비자안전정보 " 전자거래 약관심사 서비스업감시 약관심사 " " " " " 소비자안전정보 전자거래 전자거래 &특수거래



**소비자가  
행복한  
시장환경  
조성**

실천 과제	일정	담당부서
-------	----	------

--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특수거래분야 소비자보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단계판매</li> <li>· 위반행위 감시강화</li> <li>· 외국계 불법온라인 다단계 소비자피해 방지</li> <li>· 정보공개사항 개선 및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</li> </ul> </li> <li>- 전화권유·방문판매 분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실태조사</li> <li>· 범위반내용 등 홈페이지 공시, 경로당 통보</li> <li>· Do-not-call 시스템 홍보 강화</li> </ul> </li> <li>- 상조분야 분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반행위 감시</li> <li>· 선수금보전 강화 등 리스크 관리</li> <li>· 상조업체 정보 공개,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</li> </ul> </li> </ul>	<p>상시</p> <p>상시</p> <p>상시</p> <p>상반기</p> <p>1/4분기</p> <p>상시</p> <p>상시</p> <p>상반기</p> <p>6월,12월</p>	<p>특수거래</p> <p>특수거래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 <p>할부거래</p> <p>"</p> <p>"</p>
---	--	---

<b>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</b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 시지남용 감시</li> <li>- 국제카르텔 감시</li> <li>- 글로벌 M&amp;A 심사</li> </ul> </li> </ul>	<p>상시</p> <p>상시</p> <p>상시</p>	<p>시장감시총괄</p> <p>카르텔총괄</p> <p>기업결합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글로벌 경쟁법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FTA 경쟁챕터 반영 추진</li> <li>- EU, 일본, 미국·캐나다 양자협의회 개최</li> <li>- 한·중·일 국제카르텔 공조네트워크</li> <li>- 경쟁·소비자법 집행협력을 위한 MOU 체결</li> <li>- 다자회의 참석</li> <li>· OECD 회의</li> <li>· ICN 회의</li> <li>- 기술지원 사업</li> <li>· 인도네시아</li> <li>· EEC</li> <li>· 국제경쟁정책워크숍</li> <li>· 인턴쉽</li> <li>· 경쟁법 전문가 파견</li> </ul> </li> </ul>	<p>상시</p> <p>3,7,9월</p> <p>상시</p> <p>9월</p> <p>6,10월</p> <p>4월</p> <p>2-5월</p> <p>하반기</p> <p>9월</p> <p>9월</p> <p>하반기</p>	<p>국제협력</p> <p>"</p> <p>국제카르텔</p> <p>국제협력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처리절차 개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후속조치(절차규칙 개정)</li> <li>- 심의갱신제 도입(절차규칙 개정)</li> <li>-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</li> <li>· 하도급분야</li> <li>· 유통분야</li> <li>- 경고조치 대외공개(지침 제정)</li> <li>- 심결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</li> </ul> </li> </ul>	<p>법 통과 후</p> <p>상반기</p> <p>하반기</p> <p>하반기</p> <p>상반기</p> <p>하반기</p>	<p>심판총괄담당</p> <p>"</p> <p>기업거래정책</p> <p>유통거래</p> <p>심판총괄담당</p> <p>송무담당</p>

## 2

## 2015년 예산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세 입		세 출	
합 계	6,565		1,040	
세부내역	벌금 및 몰수금	6,556	인건비	368
	기타 경상이전 수입	7	기본경비	69
			사업비	177
	가산금	2.5	▪ 공정거래 행정지원	72
			▪ 경쟁촉진	33
			▪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	14
	재산수입	0.02	▪ 소비자 후생증진	58
변상금 및 위약금	0.01	한국소비자원 출연	378	
		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	48	

### 3

## 산하 공공기관 현황

### 가. 한국소비자원

#### □ 기구 및 조직(2015년)

- 6국 5실 36팀, 7개 지방지원
- 이사회(10인) : 원장, 부원장, 상임이사, 안전센터소장, 비상임이사 6명



#### □ 정원 및 현원

(2014. 12. 31. 기준, 단위: 명)

구분	계	임원	일반직	연구직	시험연구직	행정·사무직
정원	325	6	247	23	45	4
현원	330	6	251	23	46	4

#### □ 주요 기능

- 소비자 정보제공, 소비자교육, 소비자상담·피해구제, 거래현황 조사, 소비자안전 확보, 정책연구·건의, 물품·용역 등의 시험검사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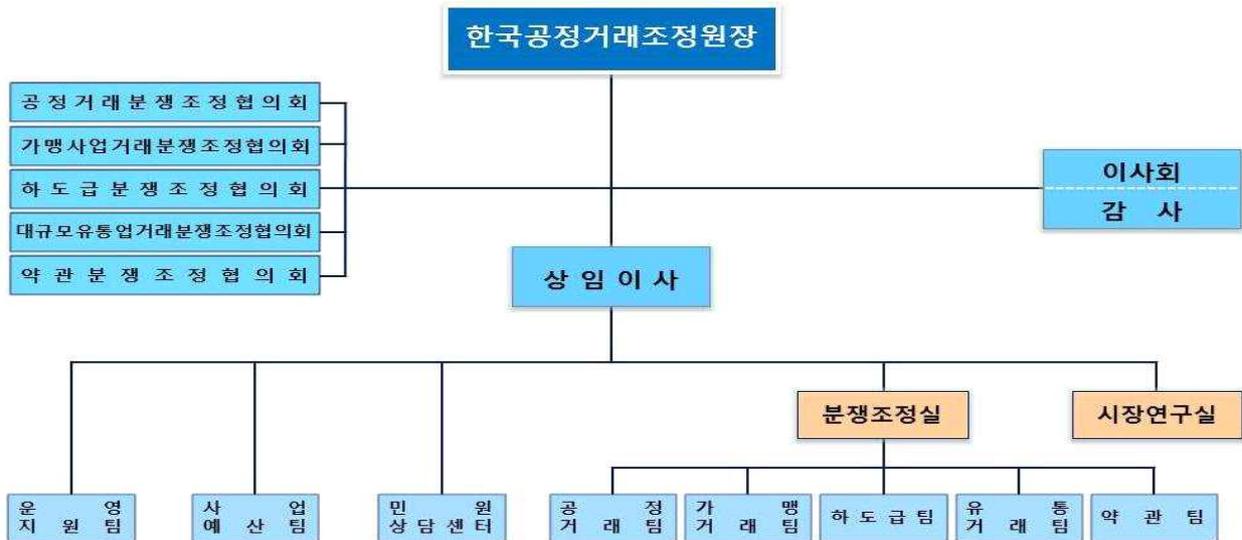
#### □ 2015년 예산 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분	수입		지출	
합계	403		403	
세부 내역	정부출연금	378	인건비	213
			사업비	162
	자체수입	25	운영비	18
			예비비	10

## 나. 한국공정거래조정원

□ 기구 및 조직 : 2실 7팀 1센터



□ 정원 및 현원

(2014. 12. 31. 기준, 단위: 명)

구분	계	임원	일반직	연구직
정원	43	2	36	5
현원	42	2	36	4

□ 주요기능

- 분쟁조정 : 공정거래, 가맹사업거래, 하도급거래, 대규모유통, 약관거래 등 5개 분야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사업자들간 분쟁 조정
- 시장연구 :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조사·연구
- 공정위 위탁사업 :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, CP 등급평가, 대학생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등

□ 2015년 예산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분	수입		지출	
합계	55		55	
세부내역	출연금	48	인건비	24
	자체수입	2	기본경비	16
	위탁사업수입	5	사업비	10
			위탁사업	5

“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,  
공정거래위원회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.”